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78
----------	-------

발의연월일 : 2026. 8. 21.

발 의 자 : 최은석 · 김상훈 · 안철수
김태규 · 김은혜 · 이소희
김선교 · 신성범 · 김성원
김장겸 · 서명옥 · 김기웅
박덕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응급의료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응급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운영 중단 및 응급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응급의료기금의 지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그 재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자율주행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등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재원 조성 기간이 한시적으로 묶여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현장 이탈을 막고 응급의료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며, 응급의료기금 정부출연 재원으로 계상되는 교통 과태료·범칙금 예상수입액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과

태료에 대한 재원 조성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9호 및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3항).

법률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필요한 재정 지원”을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 필요한 재정 지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21조제9호 중 “양성”을 “양성·확보 및 처우개선”으로 한다.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u>필요한 재정 지원</u> 을 할 수 있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 ----- ----- ----- <u>응급의료</u> <u>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 필요한 재정 지원</u>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생 략)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u>100분의 20</u>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 ----- ----- <u>100분의 30</u>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2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21조(기금의 사용)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응급의료종사자의 <u>양성</u> 등 지원	9. ----- <u>양성 ·</u> <u>확보 및 처우개선</u> -----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u>③ (유효기간) 제20조제2항제1</u> <u>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u> <u>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u>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u><삭 제></u>
---	------------------------------------